

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08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4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영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 조성.
- 「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근거하여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
 - 「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
- 추진 필요성

- 장난감도서관은 공공성이 강한 성격의 시설인 동시에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,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원 연계가 용이하고 전문성 및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탁운영이 적정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장난감의 정리·분류·보관, 대여 및 관리
 -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
 - 그 밖에 양육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수행인력 : 3명 (시설관리 및 장난감 대여시설 운영 등)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-46
- 시설규모 : 연면적 168.41m^2 (2층), 장난감보관용 컨테이너 39m^2
- 시설구조 : 장난감대여실, 세척실, 수유실 및 화장실, 휴게공간
-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2025. 5. 1. ~ 2030. 4. 30. (5년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)
-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

○ 선정기준

-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
- 신청법인·단체의 공신력,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연계 가능성
- 아동복지사업 관련 수행실적, 책임성 및 의지 등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세입(연회비) : 7,200천원 (*세외수입 처리)

○ 위탁금 예산지원 : 105,000천원(군비)

- 인건비(3명) 82,800, 운영비(사무관리, 공공운영비 등) 22,200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위탁의 필요성

-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하여 창의력·사고력 증진에 기여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,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,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정함.

○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
- 장난감의 종류 및 선호도 반영, 접근의 편리성, 위생관리 등 이용자 요구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.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장난감 대여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돋우고 보호자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이 적정.

○ 기타 검토사항

- 향후 주변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, 시설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.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현황(경과) 및 향후계획

- 2023. 4. 17. : 1시군 1장난감도서관 설치지원 예산 확보
- 2024. 7. 26. :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계획 수립
- 2024. 8. 5. ~ 11. 2. : 실시설계 용역
- 2024. 12. 16. ~ 2025. 3. 15. : 리모델링 공사 추진
- 2025. 4월 :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
- 2025. 5월 : 위수탁 협약체결 및 개소

○ 관계법령
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
-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-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4조(위탁운영)**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(이하 “위탁운영”) 할 수 있으며,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